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33
------------	-------

발의연월일 : 2019. 2. 26.

발의자 : 박완주 · 장정숙 · 정인화

윤영일 · 송갑석 · 박지원

신창현 · 백혜련 · 서영교

김현권 의원(10인)

제안이유

「초지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한편,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에는 해당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위임조항 개정(안 제5조

제3항)

초지조성허가 시 붙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에 관한 위임조항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 제4호)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u>농림축산</u> <u>식품부령으로</u> 정하는 조건을 불 일 수 있다.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해당 지</u> <u>방자치단체의 조례로</u> ----- -----.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 을 주는 행위로서 <u>농림축산식</u> <u>품부령으로</u> 정하는 행위 ② · ③ (생 략)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해당 지방자</u> <u>치단체의 조례로</u> ----- ② · ③ (현행과 같음)